

제 호

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

상 호	
대 표 자	(생년월일:)
소 재 지	
목 적	
제 품 종 류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등 제조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경찰서장

직인

※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